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8년 11월 24일
- 나. 제출자 : 광주광역시 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1998년 12월 3일.
- 라. 상정일자 : 제82회 서구의회(정기회) 회기중
-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(1998년 12월 22일)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오용수)

가. 개정 사유

-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기구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·정원관련 조례·규칙통합정비지침에 따라 일제 정비코자 함.

나. 주요 골자

- 제명 변경(전국 공통)
 -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
⇒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정수조례
- 의회사무국의 직무 규정(제2조)
 -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처리
- 전문위원의 직무 규정(제4조)
 -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, 의안검토와 의사진행 보좌
 -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음
- 사무국장 직급 및 의정계·의사계 폐지(제2조)
 - 사무국장 직급은 규칙으로 규정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이재천)

-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·정원과 관련된 조례의 명칭과 형식에 대해 개정 정비코자 한 개정조례안으로, “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” 명칭을 “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정수조례”로 제명을 변경하고
-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하고, 전문위원에 대한 그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는 소속위원장의 보좌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, 의안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하며,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도록 하였음.
-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“규칙으로 정한다”에서 “광주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”로 규정하였으며,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·정원조례의 형식과 명칭에 대하여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개정 조례안 임.

4. 관련 법 규

-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9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국)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.
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(사무국장)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.
②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4조(전문위원)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.
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
③전문위원은 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5조(직원의 정원)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광주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